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 체계를 전부 개정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며, 자살실패자, 주변 가족 및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회복을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천시 전반의 자살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를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함(안 제명)
- 나. 시민, 사업주들의 시 정책에 협조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군·구별 시행
계획을 조정하고 점검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 라.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범위와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마. 자살자의 가족 및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범위 규정
(안 제11조 ~ 제12조)
- 바. 시장은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3조)
- 사.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
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hy0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방향)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지역적 등 다각적인 사전대책과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과 군수·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에 소재한 사업주는 시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8.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9.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0.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1.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2.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 및 생명존중문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군수·구청장에게 자살예방 활동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군·구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의 점검 및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행정부시장, 보건복지담당국장, 교육청 교육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인
 3. 인천지방경찰청장 및 소방안전본부장이 추천한 각 1인
 4.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장 및 자살예방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장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
장이 소집한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실태조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살예방센터는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가족들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및 군·구·산하기관 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단기 입원 및 입소 치유 프로그램

2.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정서지원프로그램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치료지원

4. 그 밖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관련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살위험자 지원) ①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2. 정신건강 선별도구의 개발 및 보급

3.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지원

4.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관련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시장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센터와 정신보건센터
2.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3. 인천소방안전본부
4. 인천지방경찰청
5. 응급의료센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
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9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1조(자살실태조사)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8.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9.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0.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1.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2.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된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 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 5조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 8조
-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제 10조
-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유족 및 시설종사자 등 지원(제11조, 제12조, 제14조)
- 민간단체 지원 등(제1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5조, 제8조에 의한 비용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것이며, 제10조, 제 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는 우리 시의 자살률을 낮추고 효율적인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언적 성격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나. 추계 결과(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5년)	2차년도 (`16년)	3차년도 (`17년)	4차년도 (`18년)	5차년도 (`19년)	계
세입	군구자살예 방사업비	165,000	220,000	270,000	300,000	315,000	1,270,000
	소계	165,000	220,000	270,000	300,000	315,000	1,270,000
세출	군구자살예 방사업비	247,500	330,000	405,000	450,000	472,500	1,905,000
	자살예 방센 터운영비	206,000	250,000	300,000	300,000	300,000	1,356,000
	소계	453,500	580,000	705,000	750,000	772,500	1,905,000

다. 재원조달방안(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5년)	2차년도 (`16년)	3차년도 (`17년)	4차년도 (`18년)	5차년도 (`19년)	계
합계	536,000	690,000	840,000	900,000	930,000	3,896,000
국 비	165,000	220,000	270,000	300,000	315,000	1,270,000
시 비	288,500	360,000	435,000	450,000	457,500	1,991,000
군·구비	82,500	110,000	135,000	150,000	157,500	635,0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김진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5년)	2차년도 (`16년)	3차년도 (`17년)	4차년도 (`18년)	5차년도 (`19년)	계
세입	군구자살예 방사업비	165,000	220,000	270,000	300,000	315,000	1,270,000
	소계	165,000	220,000	270,000	300,000	315,000	1,270,000
세출	군구자살예 방사업비	247,500	330,000	405,000	450,000	472,500	1,905,000
	자살예방센 터운영비	206,000	250,000	300,000	300,000	300,000	1,356,000
	소계	453,500	580,000	705,000	750,000	772,500	1,905,000
재원 조달		536,000	690,000	840,000	900,000	930,000	3,896,000
국 비		165,000	220,000	270,000	300,000	315,000	1,270,000
시비	소 계	288,500	360,000	435,000	450,000	457,500	1,991,000
	일반회계	288,500	360,000	435,000	450,000	457,500	1,991,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82,500	110,000	135,000	150,000	157,500	635,000
민 간							

○ 산출내역(`15년도)

구분	사업내용	산출내역(천원)
군 구 자 살 예 방 사업	○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 자살생각, 우울증검사 ○ 자살 예방교육 실시 ○ 자살예방 홍보사업 등	○ 국 50%, 시비 25%, 군구 25% ○ 총 예산 : 330,000 — 국 165,000/시82,500/군구82,500 · 60,000천원 * 2개구 = 120,000 · 30,000천원 * 7개구 = 210,000 자살률, 인구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
자 살 예 방 센 터 운영	○ 24시간 자살상담실(1577-0199) ○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유가족 지원 및 심리 부검 ○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 자살다발지역 특화사업 ○ 학교밖청소년자살 예방 사업 ○ 노인 자살예방 사업 ○ 자살 예방 홍보사업	○ 시비 100% ○ 민간위탁금 : 206,000 — 인건비(5명) 206,000 ※ 사업비는 위탁기관 자부담(40,000)

※ 보건복지부 예산 방침에 의해 '16년부터 군구자살예방사업비 확대 지원 예정